

온라인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제도 개선 방안 연구

Research on Improvements of the Legal Deposit System for the Preservation of Online Electronic Book

장 보 성(Bo-Seong Jang)*

남 영 준(Young-Joon Nam)**

목 차

- | | |
|-----------------------|------------------------------|
| 1. 서 론 | 4. 온라인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제도 개선 방안 |
| 2. 이론적 배경 | 5. 결론 및 제언 |
| 3. 국내 전자책 보존 관련 법률 현황 | |

초 록

이 연구는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전자책의 보존을 위하여 최근 개정 및 개정 준비 중인 주요 국가의 온라인 전자출판물 납본과 관련된 법령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온라인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온라인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 대상 자료로서의 전자책의 명확한 개념 정의와 범주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온라인 전자책 제작환경을 고려한 납본 주체의 구체화 및 명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납본 포맷, 납본 부수, 시기, 방식, 보상과 제재조치, 납본자료의 이용과 매체변환과 같은 법률적 조항의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research compares and analyzes the legal deposit of national online electronic publishing and related laws that were recently amended in order to preserve the exponentially increasing number of electronic books(e-books). Based on the analysis, it also seeks ways to initiate a legal deposit system of e-books in South Korea. The research, therefore, defines the exact range and types of e-books. This research proposes three conditions to introduce the legal deposit system in order to preserve South Korean e-books. The first is to establish a clear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e-books as data subject to legal deposit for preservation purposes. The second condition is to establish a legal system in order to deposit and collect network(online-exclusive) type e-books. The final condition is to reflect the opinion of publishers and to create security measures against any loss of the companies.

키워드: 온라인 전자책, 보존, 납본, 전자출판물

Online Electronic Book, E-Book, Preservation, Legal Deposit, Electronic Publication

* 중앙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박사과정 수료(club301@korea.kr)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교수(namyj@ca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10년 10월 21일 최초심사일자: 2010년 10월 25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11월 8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4): 435-456, 2010. [DOI:10.4275/KSLIS.2010.44.4.435]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자책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책의 망라적 수집과 보존의 문제를 도외시하기에는 전자책이 담고 있는 가치와 물질적인 양이 너무 비대해졌다. 일반적으로 납본(legal deposit 또는 mandatory deposit)은 자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 보장을 위하여 출판자가 출판물의 사본을 납본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 조항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의 국가도서관들은 자국의 국가문헌을 망라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납본제도를 활용하고 있다(최재황, 박승진, 김정택 2009, 209).

이러한 납본 대상 자료는 초창기 인쇄자료에만 적용되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연속간행물, 음악자료, 마이크로폼, 비디오 레코딩, CD-ROM 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이후 전자출판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전자출판물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만 활용 가능한 전자출판물은 정보 생성 및 접근의 편리함 등으로 생산과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매체의 특성상 이들 자료의 대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훼손 및 소멸되기 때문에 국가문헌을 수집해야 하는 국가도서관 입장에서는 납본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주요 국가에서 온라인 전자출판물에 대한 납본 법령을 개정하거나 개정 준비 중에 있다. 온라인 전자출판물의 대표적 유형인 전자책은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기기 화면에 떠올려 읽을 수 있게 만든

전자 매체형태의 책이다. 전자책은 이미 도서관에서 종이책과 같은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자책을 종이책과 동일한 국가 문화유산으로써 후대에 안전하게 전승하기 위해서는 망라적 수집, 완전한 수집 등 현행 납본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전자책에 대한 보존과 접근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온라인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방법은 첫째, 연구대상인 전자책에 대한 개념정의와 선행연구를 통한 해당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둘째, 현재 전자책 보존과 관련된 법률 현황을 조사·분석한다. 셋째, 최근 개정 및 제정된 주요 국가의 온라인 전자출판물 납본 법령을 비교·분석하여, 연구의 논거자료로써 활용한다. 넷째, 이들을 바탕으로 온라인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의 범위는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 전자책의 용어정의 및 구분에서 연구 범위를 설정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전자책의 개념

전자책에 앞서 전자출판물과 온라인 전자출판물에 대한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출판문

화산업진흥법 제2조 4호에 따르면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하지만 여러 문헌과 웹사이트에서 전자출판물과 관련하여 여러 용어들이 혼용되어 사용 중이다. 전자출판물과 관련된 관련어들은 디지털자료, 온라인자료, 온라인 정보자원, 온라인 저작물, 전자문헌, 네트워크 전자출판물, 디지털정보자료, 디지털문헌 등이 있다. 상술한 용어들은 현재 엄격하게 구별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으며, 유형의 구분 또한 모호한 실정이다. Harai(1999)는 전자출판물의 매체 가시성 여부에 따라 물리적 형태를 갖춘 패키지형과 원격접근이 가능한 온라인(네트워크) 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오프라인 전자출판물과 온라인 전자출판물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전자출판물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그 중 온라인 전자출판물을 연구의 범주로 한정하여 진행한다. 즉 온라인 전자출판물이란, 온라인 환경에서만 유통되고 이용되는 자료를 의미한다.

온라인 전자책은 온라인 전자출판물의 하나의 유형이다. 현재 전자책에 대한 법률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전자책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한국전자출판협회(2006)는 전자책이란 '도서로 간행되어 있거나 또는 도서로 간행될 수 있는 저작물의 내용을 디지털데이터로 CD-ROM, DVD 등의 전자책 기록매체 또는 저장장치에 수록하고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경유하여 컴퓨터 또는 휴대단말기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

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전자책컨소시엄(2006)은 전자책이란 '도서로 간행될 수 있는 저작물의 내용이 디지털데이터로 전자적 기록매체, 저장장치에 수록되고,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경유하여 컴퓨터 또는 휴대단말기 등을 이용해 그 내용을 읽고 보도 들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2006)은 전자책은 '단순한 텍스트 기반 정보의 디지털화된 콘텐츠 또는 전자책 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시스템만으로 인식하여서는 안 되며, 텍스트 기반의 콘텐츠에 멀티미디어 요소를 구현하는 기술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리고 이 모두를 패키징하는 하드웨어 시스템이 융합되어 종이책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이 창작된 콘텐츠를 전달하는 매체'를 의미한다.

공통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전자책이란 '출판사 및 전자출판업체가 도서로 간행되었거나 간행될 수 있는 저작물의 내용을 디지털데이터를 이용해서 전자기록매체나 저장장치에 수록한 뒤,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통해 컴퓨터나 휴대단말기로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 정의한다.

전자책은 온라인으로 출판되어 온라인에서만 활용 가능한 전자책, CD-ROM, DVD와 같은 유형물의 전자책, 종이출판물을 디지털화하여 종이출판물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전자책, 플래시, 음성 등의 기능이 지원되는 멀티미디어 전자책 등 그 종류와 형식이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으로 출판되어 온라인에서만 활용 가능한 온라인 전자책이 연구의 대상이자 범위이며, 이때 무상·유상은 구분하지 않는다. 내용의 구성은 텍스트 위주의 전자책으로 제한한다. 이유는 첫째, 도서관법 시행

령 제13조 도서관자료의 납본에 따르면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4항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CD-ROM, DVD 등의 유형물은 이미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플래시와 같은 멀티미디어 기능이 구현되는 멀티미디어 전자책의 보존 방법과 단말기 등의 하드웨어 해결책이 마련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한을 둔 것이다.

2.2 디지털자료의 보존과 납본

디지털자료의 보존은 특정 데이터 형태가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기술적인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아카이빙 활동의 일부이다. 전자책의 보존은 전자책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활동이며, 시간이 경과되어도 그것에 접근할 수 있고 진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들을 의미한다. 즉 전자책의 무결성(integrity)을 상실하지 않고, 저장매체의 손상 및 퇴화(media obsolescence) 또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인한 기술적 퇴화(technology obsolescence)의 위협으로부터 전자책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유용한 형태로 존속시키도록 하는 일련의 관리활동이다 (이수상 2004, 120 수정인용).

전자책 보존의 주요한 목적은 전자책의 멸실과 훼손을 방지하고 전자책을 미래세대에 전달하는 것이다. 전자책의 멸실 및 훼손은 출판사 및 전자책 제작사의 파산과 임의삭제, 천재지변과 같은 경우에 발생하므로, 이러한 위협요소로부터 전자책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하는 당위성이 요구된다.

한편 국가도서관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해서 망라적으로 수집해야 하며, 이 후 국가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현재는 물론 다음 세대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납본제도가 있다. 납본법은 1537년 프랑스가 납본법을 도입한 이래로 벨기에(1594년), 영국(1610년), 스웨덴(1661년), 덴마크(1697년), 핀란드(1702) 등의 순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왔으며 오늘날 약 140개국이나 하나 이상의 납본제도를 가지고 있다(Jasion 1991; 윤희운 2002). 납본에 대한 정의는 각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나라에서 발간된 문헌(출판물)을 소정의 기관에 제출하는 제도'이다. 국내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르면 납본이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하는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납본제도는 인류의 문화재산을 총체적으로 수집·보존하여 미래세대에 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장치이다.

2.3 선행연구

지금까지 전자출판물의 납본과 관련하여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납본 대상의 개념 설정에 따라, 혹은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논문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전자책이라는 특정 매체를 대상으로 그 매체의 수집·활용이 아닌, 보존을 목적으로 한 납본제도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제도의 합리적인 방안 제시를 위하여 그 동안 국내외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 자료를 살펴보았다.

윤희운(2002)은 전자출판물 납본제도와 관련하여 납본법령체계, 납본 주체와 피납본기관, 대상 자료의 범주, 납본 부수와 시한, 납본자료의 매체변형, 보상과 제재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전자출판물의 납본제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후속 연구에서 납본제도 개선모형(윤희운 2003)을 제안하였다.

서혜란(2003)은 디지털자료라는 개념으로 디지털자료 납본제도에 대한 14개 국가의 최근 동향을 조사·분석하였으며, 국립디지털도서관의 디지털자료 납본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김보현, 선명순(2007)은 전자출판물 납본제도 도입을 위하여 외국의 사례를 한국과 비교·분석하고 한국의 온라인 전자출판물 납본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도입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한국의 특성에 맞는 온라인 전자출판물 납본제도의 법적 근거마련과 온라인 전자출판물 수집을 위한 자료선정기준 및 자료선정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최재황,곽승진,김정택(2009)은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보존과 접근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세계 주요국의 납본 관련 법률 및 지침을 참조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요소를 추출하고,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 및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연구들은 전자출판물의 납본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하여 납본제도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전자출판물이 아닌, 온라인 전자책이라는 특정한 매체를 대상으로 그 매체의 보존에 중점을 둔 납본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하기에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국외 온라인 전자출판물의 납본체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제3장에서 참조되는 각국의 온라인 전자출판물 납본관련 법령으로 대신한다.

3. 국내 전자책 보존 관련 법률 현황

3.1 도서관법

한국의 출판물 납본 규정은 도서관법 제20조,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수집되는 도서관자료의 선정, 종류, 형태, 보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도서관법의 납본관련 법령에서 온라인 전자책에 대한 납본 내용은 제외되어 있다. 이와 유사한 사항이 도서관법 제20조 2의 '온라인자료의 수집' 조항이 있다. <표 1>은 도서관법 제20조 2의 '온라인자료의 수집'에 대한 법률 내용이다.

<표 1>과 같이 도서관법 제20조 2의 '온라인자료의 수집'은 온라인 자료에 대한 수집을 법률에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온라인자료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 제7호의 공중송신)되는 자료(도서관법 제2조 정의)'이며, 이를 대상으로 수집·보존하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 고시 제2010-1호에 따르면 수집 대상이 되는 온라인자료의 종류는 웹사이트, 웹자료이다. 웹자료는 문자자료(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표 1〉 도서관자료 납본 관련 법령

법 조항	법률 내용
도서관법 제20조의2 (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 음성·음향자료(음악자료, 음성자료, 음향자료 등), 영상자료(방송, 영화, 공연, 이러닝 자료 등), 이미지자료(사진, 회화 등)가 포함된다. 온라인자료의 형태는 ISO(국제표준화기구), KS(한국산업규격) 및 국내의 표준기구를 통해 공표된 표준 규격에 해당하는 모든 파일 형태, 그 밖에 현재 각종 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는 파일형태,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파일형태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시 제2010-1호처럼 전자책도 온라인자료의 범주에 포함되어 수집 및 보존되고 있다. 하지만 법적의무 조항에 의한 납본이 아닌,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자책 중 자료의 최신성, 이용률, 보존가치 등의 자료선정 기준에 의한 수집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책 수집 방식은 전자책 제공자에 따라 수집 및 서비스 비용 요구가 상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원본파일과 별도로 서비스용에 대해서도 구매 요구하는 경우와 원본파일 수집 보상비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원본파일 보상비만 요구하는 전자책 사업자 자료를 우선 수집 및 서비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2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책과 같은 온라인자료에 대한 납본 법률 개정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7년 9월에 발의된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자료 납본법)'이 그것이다.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으며, 앞서 언급한 『도서관법』의 '납본 부분'과 '온라인 자료의 수집'이라는 신규 조항 신설로 마무리되었다. '온라인자료 납본법'을 제안한 이유는 인터넷을 통하여 디지털자료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그 가치를 판단할 여유도 없이 짧은 기간에 소멸되고 있어 가치 있는 디지털자료의 보존에 관한 정책 및 법·제도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활용 및 보존가치가 있는 디지털자료를 납본 받아 보존함과 동시에 디지털도서관을 통하여 국민들이 공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 및 정보 활용 능력을 신장시키려 하였다. 〈표 2〉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다.

〈표 2〉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법 조항	법률 내용
제2조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지식정보자원의 전달을 목적으로 디지털형태로 제작, 처리된 모든 온라인 매체 온라인출판은 저작물 등을 공중의 수요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전송하는 것 납본은 디지털자료를 온라인으로 출판하거나 제작한 자가 제1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
제12조 디지털 자료의 납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권자 또는 온라인출판자는 (1) 국립디지털도서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자동수집에 의한 납본, (2) 저작권자 또는 온라인출판자로부터의 의무적 송신, (3) 협의에 의한 자발적 납본방법으로 국립디지털도서관에 디지털자료를 납본. 또한 디지털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13조 납본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본 대상은 인터넷 주소, 언어, 저자, 발신자 또는 수취인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디지털자료로서 (1) 국내로 특정하여 지정된 인터넷 주소에서 출판된 디지털자료, (2) 국내에서 공표될 목적으로 외국의 인터넷 주소에서 출판된 디지털자료, (3) 국내 거주자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자가 인터넷에서 공표한 디지털 자료 등
제13조 자동수집에 의한 납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에서 제한 없이 공표되어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자료에 관하여는 자동수집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수집, 복제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 또는 온라인출판자는 수집·보존 금지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 국립디지털도서관이 수집·복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납본
제15조 의무적 납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저작권자 또는 온라인출판자는 국립디지털도서관에 디지털자료를 의무적으로 납본(국립디지털도서관에 송신, 송부)
제21조 디지털 자료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가 국립디지털도서관 내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납본된 디지털자료를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음. 또한 이미 공중에 제한 없이 공표된 디지털자료의 경우, 외부에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제22조 이용거절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자료의 저작권자 또는 온라인출판자는 납본한 디지털자료에 대하여 국립디지털도서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거절의 의사 표시

〈표 2〉와 같이 ‘온라인자료 납본법’은 법안 제 정당시 일방적인 법안 추진이라는 비판과 전자책 산업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반대가 있었으며, 법안 심사를 담당한 국회문화관광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였다. ‘온라인자료 납본법’이 실패한 주요 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국회문화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 2007, 관련 신문 기사 등).

첫째, 납본의 대상 및 주체가 불명확하다. 납본의 대상이 ‘온라인 디지털자료(안 제1조 목적)’인지, ‘온라인으로 출판된 디지털자료(안 제2조 정의)’인지 문리적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 납본

주체 역시, ‘디지털자료를 온라인으로 출판하거나 제작한 자(안 제2조 2호 등)’와 ‘저작권자 또는 온라인출판자(안 제12조)’로 규정하고 있다. 즉, 납본의 주체 역시 문리적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 이것은 향후 납본 법률 개선 시 기초가 되는 것으로 반드시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둘째, 온라인출판 및 전송 개념의 정의가 모호하다. 안 제2조는 ‘온라인출판’과 ‘전송’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다. 안 제2조 제2호는 ‘온라인출판은 저작물 등을 공중의 수요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작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가 필요하다. 안 제2조 제5호에서 '전송'은 저작권법의 '전송'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나, 제정안은 저작권법과의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저작물 등', '전송'에 대한 개념정의가 없거나 범위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셋째, 납본에 대한 보상과 관계가 불명확하다. 납본자료에 대한 보상제도는 향후 법 적용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재산권침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안 제5조)'과 '디지털자료 관리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디지털자료 보상 기준(안 제12조 제2항)'이 동일한 개념인지, 양자의 관계가 어떠한지 등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출판업계에서는 구체적인 디지털자료 납본에 따른 보상금액이나 관련 예산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자료 제출만으로 우선 결정하는 방식은 관련 업계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넷째, 자동수집납본 방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안 제12조 제1호는 자동수집에 의한 납본은 '국립디지털도서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안 제14조 제1항은 자동수집에 의한 납본은 '자동수집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실시토록 법률로 정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정안에서는 판매 목적이 아닌 대학의 논문이나 저널 등을 해당 기관의 허락 없이 '자동수집'의 방법으로 수집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기관 이

기주의, 해당 도서관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섯째, 납본 제외와 관련한 절차적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 제정안 제17조는 '용량 또는 성격상 기술적으로 보존이 불가능한 경우' 등 납본 제외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출판자나 저작권자가 안 제17조를 근거로 납본을 거부하였을 경우에, 납본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대한 판단주체나 판단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납본 제외 사유가 아닌데도 동조를 이유로 납본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과태료 등)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여섯째, 해킹과 외부 열람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납본된 판매 목적의 온라인자료들이 외부에 무차별적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필요하다. 또한 납본된 전자책의 서비스 측면에서 정부가 전자책을 종이책처럼 1권은 보존하고 1권은 외부에 제공한다고 하면, 디지털자료의 특성상 외부에 무제한으로 풀려 기존 전자책 시장을 고사시킬 수 있다.

4. 온라인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제도 개선 방안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최근에 개정 및 개정 준비 중인 해외 각국의 온라인 전자출판물 납본법과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온라인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제도 개선에 필요한 내용을 8가지로 정리하였다. ① 납본 주체와 피납

본기관, ② 납본 대상 전자책의 범주, ③ 납본 포맷, ④ 납본의 부수와 시기, ⑤ 납본의 의무와 방식, ⑥ 보상과 제재조치(과태료), ⑦ 납본자료의 이용, ⑧ 납본자료의 매체변형이다. 이 필요 사항을 제외한 추가적인 사항은 연구의 제한점이며, 해당 내용들을 중심으로 각국의 납본법령을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 국가 및 납본 관련 법령은 <표 3>과 같다.

<표 3>과 같이 8개 국가를 선정한 이유는 해당 국가가 최근 온라인 전자출판물과 관련하여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영국국립도서관(2010)에서 2009년에 조사한 조사결과 8개 국가가 모두 전자책에 대하여 납본법령 하에서 수집을 예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2010년 온라인 전자출판물에 대한 납본제도를 개정 및 준비 중에 있다. 미국은 2010년 2월 온라인으로만 제공되는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도 미의회도서관(LC)에 납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저작권 등록에 관한 규칙(PART 202, Title 37, Code of Federal Regulations)이 개정되면서 납본 면제의 대상이 변경된 것이다. 전자출

판물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의회도서관의 기본적인 사명인 정보의 포괄적인 수집과 저장을 다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형태로 발행되지 않은 온라인 전자출판물에 대하여 납본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Copyright Office은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한 개정 내용을 검토하여, 2010년 1월 25일자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 납본 법률 개정과 관련된 내용은 각각의 세부 파트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서 Copyright Office은 온라인에서만 제공되는 전자출판물의 전송 기술 등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제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잠정적인 것이며, 2010년 이후에도 법률 개정에 대한 의견을 보충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2010년 6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민간출판사의 전자책 및 전자저널 등 온라인 전자출판물을 인쇄출판물과 동일하게 국립국회도서관에 납본하는 제도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배포 목적으로 발행되는 모든 온라인 전자출판물은 국립국회도서관법에 의거하여 납본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람(개인)이

<표 3> 조사 대상 국가의 납본관련 법령 현황

국가명	납본관련 법령의 명칭(최근 개정연도)
미국	Copyright Act, 'Mandatory Deposit of Published Electronic Works Available Only Online'(2010)
일본	國立議會圖書館, オンライン資料の制度的収集(2010)
영국	Copyright law of the U.K. Legal deposit libraries Act(2003)
독일	Law regarding the German National Library(2008)
핀란드	Legal Deposit Act(2004)
캐나다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2007) Library and Archives Canada, Legal Deposit
싱가포르	Digital Legal Deposit(2007)
노르웨이	Act no. 32 of 9 June 1989 Relaitng to the Legal Deposit of Generally Available Document(2008)

인터넷 등에 의해 이용 가능하게 한 정보 가운데, 동법 제2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전자책, 연속간행물 등에 상당하는 정보를 개별의 계약에 의하지 말고 납본 수집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또한 일본국회도서관은 추후 제도 정비 및 법 개정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11년에 본격적으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에 관한 세부 내용은 미국과 같이 세부 파트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4.1 납본주체와 피납본기관

납본주체(depositor)는 납본을 시행하는 기관을 뜻한다. 인쇄출판물의 경우 대부분 국가에서 출판사를 납본주체로 명시하고 있다. 피납본기관(depository)은 납본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인쇄자료의 경우 단일기관으로 집중되는 경우와 여러 국가기관으로 분산하는 경우가 있다. 조사 대상 국가의 온라인 전자출판물 납본주체와 피납본기관은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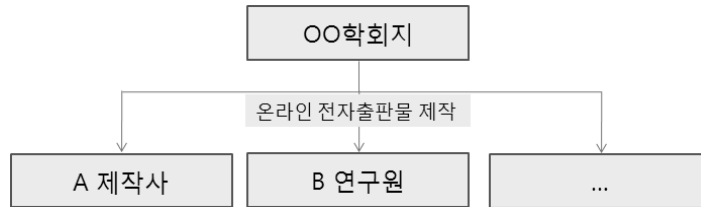
<표 4>와 같이 납본주체는 일반적으로 출판사로 명시하거나, 저작권자, 온라인 전자출판물

을 게시한 사람, 배타적 발행권자 등으로 인쇄자료에 비교해,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전자책의 납본에 대한 납본 주체를 명시할 때 전자책을 생산·제작하는 주체가 다양하고 출판(게시)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납본 주체를 세분화하여 법률 그 자체 또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 전자출판물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출판사가 직접 전자책을 제작하는 경우보다는 서비스사업자들이 전자책을 제작하고 인증받고 있다. 납본주체를 정의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전통적인 의미의 출판사와 전자책의 출판사 개념은 달라져야 한다. 경우에 따라 출판사에서 복수의 전자책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면 각 서비스 업체마다 동일한 원고에 동일한 형식의 전자책을 발행할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배타적 발행권자가 아니면 납본을 할 수 없고 출판사는 전자책을 제작하지 않으므로 납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현재 전자출판물 인증의 경우 동일출판사의 출판물이라고 하더라도 제작 주체가

<표 4> 조사대상 국가의 온라인 전자출판물 납본주체 및 피납본기관

국가명	납본주체	피납본기관
미국	저작물의 저작권자, 배타적 발행권자	미의회도서관, Copyright office
일본	민간출판사, 온라인 전자출판물을 출판(게시)한 사람	국립국회도서관
영국	공공기관 및 출판사	영국국립도서관 등
독일	출판사 등	독일 국립도서관
핀란드	출판사	핀란드 국립도서관
캐나다	출판사	캐나다 국립 기록관·도서관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 출판되는 모든 자료의 출판업자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노르웨이	출판사	노르웨이 국립도서관 등



〈그림 1〉 학회지 전자출판 사례로 본 납본 주체 문제

다르면 각자 인증받고 있다.

추가적으로 현재 미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저작권 및 배타적 발행권자라는 개념도 국내에 도입하고자 할 경우, 그 개념을 좀 더 상세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림 1〉과 같은 사례가 국내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림 1〉의 경우는 전자책과 유사한 인쇄형태의 학회지를 전자출판물로 변형하였을 경우를 누가 납본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학회지를 발행한 학회가 납본의 주체가 되는가? 이 경우 어디서 만든 제품을 납본해야 하는가의 2차적인 문제까지 발생한다. 그럼 제작자가 납본의 주체가 되면, 제작자가 만든 각각의 온라인 전자책이 납본 대상이 되어 납본되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학회지의 논문은 개별 논문단위로 이용되기 때문에 저자들이 자발적으로 납본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까지 납본 주체가 복잡하게 된다. 따라서 온라인 전자책의 납본 주체를 법령에 명시할 때, 현재 국내 실정 및 제작 환경을 고려한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피납본기관은 〈표 4〉와 같이 대부분 국가도서관으로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납본기관의 분산화와 집중화 중에서 어느 방식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기로 한다. 일반적인 국가도서관으로 피납본기관을 규정

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4.2 납본 대상 전자책의 범주

온라인 전자책은 앞선 용어정의와 같이 그 종류와 형식, 기준이 매우 다양하다. 즉 납본 대상 전자책의 범주를 설정하기도 그 만큼 어렵고 복잡하다. 하지만 온라인 전자책의 납본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납본 대상이 되는 전자책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납본 대상을 규정할 때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중에 적용할 법리에 따라 납본 대상이 달라지므로 납본 대상에 적용할 법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도서관으로서 자료의 망라적 수집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사대상 국가의 온라인 전자출판물의 납본 대상 자료의 범주는 〈표 5〉와 같다.

〈표 5〉와 같이 납본 대상 자료로서 전자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 반면, 전자출판물, 온라인자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일본의 경우 납본 대상 전자책을 도서, 잡지 등에 상당하는 완결한 형태로 네트워크상에서 발행되는 자료를 의미하고 있으며, 종이판이 발행되더라도 인터넷판을 수집하고, 유·무상 상관없으며, 내용 선별 또한 없는 망라적 수집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싱가포르

〈표 5〉 온라인 전자출판물의 납본 대상 자료 범주

국가명	납본 대상 전자책의 범주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에서만 제공되며 미국에서 간행된 전자출판물(전자책 명시 없음) • 일단 2010년 2월 24일 이후 간행된 전자출판물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책, 전자저널, CD-ROM, DVD, 비디오 등 배포목적으로 발행되는 모든 출판물(전자책 명시) • 도서, 잡지 등에 상당하는 완결한 형태로 네트워크상에서 발행되는 자료 • 인쇄형도서나 연속간행물에 해당하는 종이판이 발행되더라도 인터넷판 수집 • 유·무상 상관없이 납본 • 내용 선별 없이 망라적 납본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인쇄 온라인자료(비인쇄 오프라인자료와 구분함)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적으로 등록된 출판사의 자료로 제한(전자책 명시)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핀란드에서 배포될 것을 주목적을 하여 외국에서 제작된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 • 일반 네트워크상에서 대중이 이용 가능한 온라인자료로 핀란드에서 처음 이용되거나 핀란드 대중이 주로 이용할 것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자료(온라인자료라고 표기)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에서 이용되는 출판물을 제작하는 출판업자 • 제목, 저자, 발행일을 식별할 수 있는 도서, 잡지, 연감, 연구논문, 학술저널 등 • 소프트웨어와 설명서, 메타데이터 등 설명이 가능한 데이터도 함께 제공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내에서 출판·생산된 모든 디지털콘텐츠(전자책 명시) • 판매 또는 공공 접근을 위한 공개자료 • 포맷, 언어, 내용 등과 상관없이 납본 • ISSN, ISBN, ISMN이 없어도 납본 대상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에게 배포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노르웨이의 모든 출판물 • 전자문헌(유·무형의 전자출판물)으로 표현

도 유사한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제도 개정 시 납본 대상 온라인 전자책의 범주는 기본적인 전자책의 내용과 기록사항을 준수하는 완결한 형태의 전자책이 대상이 되며, 이를 위한 자세한 사항을 시행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도서관의 망라적 수집 원칙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온라인 전자책을 포함하며, 우리나라에서 배포될 것을 주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작된 온라인 전자책도 포함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일본의 사례와 같이, 종이책이 발행되더라도 온라인 전자책을 수집하며, 유·무상 상관없이, 내용의 선별없이 수집하는 원칙 등이 규정화해야 한다.

4.3 납본 포맷

납본 포맷은 피납본기관에 납본하는 온라인 전자책의 포맷을 의미한다. 현재 국제적으로 전자책은 ePUB가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국내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전자책은 다양한 포맷으로 표현되고 있다. 조상대상 국가의 납본제도 상에서 전자출판물 포맷 또는 형식에 대한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과 같이 납본 대상인 전자책의 구체적인 납본 포맷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독일과 노르웨이의 경우 현재 PDF/A를 최우선 납본 대상 포맷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싱가포르는 전자출판물의 최상의 버전과 완전한

〈표 6〉 조사대상 국가의 온라인 전자출판물 납본 포맷(형식)

국가명	납본 포맷
미국	• 전자출판물의 최상의 버전(best edition), 완전한 복사본(complete copy)
일본	•내용 없음
영국	•내용 없음
독일	•실제 온라인으로 간행되는 것과 동일해야 함 •우선순위 ① PDF/A ② 기타 PDF ③ HTML ④ PostScript ⑤ 기타 XML기반의 포맷
핀란드	•내용 없음
캐나다	•내용 없음
싱가포르	•현재 출판된 또는 보편적인 출판 포맷으로 납본
노르웨이	•출판사로서의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형식을 유지(현 PDF/A(CMYK) 형식으로 납본) •결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요구

복사본을 현재 출판된 또는 보편적인 출판 포맷을 납본 포맷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도서관에 납본되는 납본자료의 포맷은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포맷, 즉 현재의 보편적인 출판 포맷이어야 한다. 온라인 전자책의 경우 그 포맷과 유형이 다양하고 국내에서 관련 표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양한 포맷의 온라인 전자책을 납본 받아야 한다. 납본 포맷을 선택할 경우 보존을 염두에 두고 납본 주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온라인 전자책은 그 콘텐츠만이 아닌 단말기와 뷰어가 있어야만 구현이 가능하므로 관련 단말기와 뷰어의 납본 및 보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 전자책 제작 시장에서는 전자책 서비스 사업자마다 동일한 원고를 매체의 특성에 따라 변형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출판사의 원고를 e-PUB, pdf, xml 등 제작형식에 따라 전자책을 제작한 경우, 이 모든 형식의 온라인 전자책을 개별 납본 받게 된다면, 납본 주체와 납본 가짓수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향후 온라인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제도 개정 시 이러한 전자책을 변형하는 시장 환경도 고려하여야 한다.

4.4 납본의 부수와 시기

적정 납본 부수와 시기의 문제는 납본제도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 요소이다. 납본 부수는 출판량과 수입여부, 자료의 유형과 언어, 생산 주체에 따라 달리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핀란드의 경우 인쇄자료는 6부를 납본하지만, 온라인 출판물의 경우 1부를 납본한다. 〈표 7〉은 조사대상 국가의 온라인 전자출판물의 납본 부수와 시기이다.

〈표 7〉과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온라인 전자출판물의 납본 부수는 1부로 제한하고 있다. 인쇄자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전자책의 적정 납본 부수는 출판사의 최소부담원칙과 국가도서관의 최소 확보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국가의 온라인 전자출판물의 납본 부수는 온라인 전자출판물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온라인 전자출판물은 무한 복제와 대량 생산 유통이 가능하다. 따라서 온라인 전자책의 납본 부수를 인쇄자료와 같이 1부로 제한하기 보다는 1회로 횡수를 명시하는 것이 온라인 전

〈표 7〉 조사대상 국가의 온라인 전자출판물 납본 부수와 시기

국가명	납본 부수	납본 시기
미국	1부	3개월 이내
일본	내용 없음	내용 없음
영국	1부(타도서관은 사본으로 대체)	내용 없음
독일	1부	내용 없음
핀란드	1부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
캐나다	1부	7일 이내
싱가포르	1부	내용 없음
노르웨이	2부	가능한 신속히 제출 요구(최장 1개월)

자출판물의 특성을 반영한 납본 부수이다.

다음으로 법률상 납본 시기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 인쇄자료의 납본시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CENL/FEP 2005). 원칙적으로 납본 시기는 자료가 출판된 후 즉시 납본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특히 온라인 전자출판물은 인쇄자료에 비해 손실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욱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온라인 전자출판물은 네트워크상에서 모든 작업의 처리가 가능하므로, 납본 시기를 빠른 시일 내로 당길 기반 여건도 마련되어져 있다.

4.5 납본 의무와 방식

국가도서관은 납본법령과 도서관법 또는 저작권법의 관련조항에 근거하여 각국에서 출판되는 모든 도서와 간행물 등을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가에서 강제사항으로 피납본기관에게 도서와 간행물 등을 납본하는 것은 아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납본법과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립도서관의 납본자료에 대한 수집 및 이용권한을 인쇄원본에서 디지털파일로 확대하기 위하여 출판사들과 별도의 '납본

협약'을 체결하기도 한다(도서관연구소 2009). 〈표 8〉은 조사대상 국가의 온라인 전자출판물의 납본 의무와 납본방식이다.

〈표 8〉과 같이 온라인 전자출판물의 납본의무는 인쇄자료와 상이하게 자발적 납본으로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도서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납본의 의무가 부과되며, 캐나다의 경우는 납본자료에 대해서 암호를 제거(해독)하거나, 접근제한기능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온라인 전자출판물의 해킹과 유출을 우려하는 국내 출판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코 수긍하기 힘든 규정일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전자책의 납본을 규정할 경우 강제조항이 아닌 자발적 납본을 유도하고 국가도서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출판사는 납본의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전자출판물의 납본 방식은 대부분 전자출판물의 납본시스템에 의해서 업로드(송신)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 업로드(송신) 방식과 자동수집방식을 택하고 있다. 독일은 OAI(Open Archive Initiative)를 통한 자동수집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OAI를 준수하는 레포지토리에 전자출판물(파일)이 존재해

〈표 8〉 조사대상 국가의 온라인 전자출판물 납본 의무와 방식

국가명	납본 의무	납본 방식
미국	• 저작권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납본 의무 부과	• 내용 없음
일본	• 송신의 의무 부여 • 저작권 보호 수단 해제 고려	• 송신 또는 자동수집
영국	• 자발적 납본	• e-mail, FTP
독일	• 의무 납본	• 업로드 • OAI를 통해 자동수집
핀란드	• 의무 납본(실제 전자출판물이 되는 자료)	• 내용 없음 ¹⁾
캐나다	• 자발적인 납본 요구 • 압호를 제거(해독)하거나, 접근제한기능을 해제하도록 규정	• 내용 없음
싱가포르	• (온라인 전자출판물) 자발적 납본 • 인쇄자료 및 오프라인 전자출판물은 의무납본	• DNet ²⁾ 업로드, e-mail
노르웨이	• 노르웨이 국립도서관의 디지털장기보존소의 특별한 요청에 의해서 납본	• 내용 없음

야만 한다. 비록 자동수집에 의한 납본 방식이 해당 온라인 전자책을 손쉽게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지만, 출판사나 저작권자의 동의나 인식없이 상당한 개인정보가 국가 도서관에 축적되는, 즉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이 발행할 수 있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4.6 보상과 제재조치(과태료)

인쇄자료 납본 시 납본자료에 대한 경비를 보상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독일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대다수 국가의 법령은 출판 및 우송 비용을 납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상 제도를 두는 목적은 출판비용을 보전해 줌으로써 자발적 납본을 유인하는데 있다. 소수의 출판물을 고가로 출시하였을 경우에는 보상제도가 없으면 납본자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납본 부수만큼의 판매 손

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가에서 납본에 소요되는 제비용이 출판사의 손익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보상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윤희운 2002, 202). 한편 자발적 납본을 유도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납본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표 9〉는 조사대상 국가의 납본자료 보상과 제재 조치에 대한 사항이다.

〈표 9〉와 같이 현재 전자출판물에 대한 보상은 무보상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제재조치는 명확히 규정된 것이 없다. 일본의 경우 전자출판물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납본 법령 개정 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캐나다의 경우는 온라인 전자출판물이 자발적 납본 대상이므로 제재 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표 8〉과 〈표 9〉를 종합해 볼 때 현 시점에서 온라인 전자책 납본제도 개정 시 자발적 납본

1) 이용에 제한 없는 온라인자료는 자동수집.
2) 싱가포르 전자출판물 납본시스템.

〈표 9〉 조사대상 국가의 온라인 전자출판물 보상과 제재조치

국가명	보상	과태료
미국	• 무보상	• (인쇄자료) 250달러
일본	• 송신과 관련된 수용비	• (전자출판물) 고려하지 않음 • (인쇄자료) 소매가격의 5배
영국	• 무보상	• 없음
독일	• 무보상	• (인쇄자료) 경범죄 처벌 및 최고 1만 유로 부과
핀란드	• 무보상	• 없음
캐나다	• 무보상	• (온라인전자출판물) 자진납본으로 제재조치 없음
싱가포르	• 무보상(납본실적에 따라 이용서비스 차등)	• 없음
노르웨이	• 무보상 • 우편비용 납본자 부담	• 없음

을 최대한 유도하고, 이를 위한 보상제도 마련은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강제하는 제재 조치는 현 시점에서 고려할 필요는 없다. 특히 향후 보상 조치는 납본자료의 이용을 위한 보상과 보존을 위한 매체변환의 보상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겠다. 제재조치 또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4.7 납본자료의 이용

납본된 자료의 이용은 납본을 행하는 납본주

체의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한 문제이다. CENL/FEP(2005, 최재황 등 2009)에서는 이용자가 납본된 전자출판물을 다운로드, 저장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해 당사자인 저작권 소유·유관단체들은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다운로드와 저장은 절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전자매체의 특성상 해킹과 불법 복제·유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들이 발생될 경우, 납본한 출판사에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표 10〉은 조사대상 국가의 온

〈표 10〉 조사대상 국가의 납본된 온라인 전자출판물의 이용 조건

국가명	이용 조건
미국	• 관내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만 열람
일본	• 관내 서비스(열람 가능, 인쇄금지)
영국	• 없음
독일	• 없음
핀란드	• 없음
캐나다	• 출판물을 납본한 자가 선택 공개접근 및 다운로드 열람 또는 접근제한 다운로드·인쇄불가, 관내 열람
싱가포르	• 사본 제작 및 사본 관내(LKCRL ³⁾) 열람, 인쇄불가
노르웨이	• 기관의 단말기를 통하여 개인이용자에게 제공

라인 전자출판물 납본자료의 이용 조건이다.

〈표 10〉과 같이 납본된 전자출판물은 대부분 관내 열람서비스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전자출판물의 다운로드 및 인쇄 출력은 불허하고 있다. 국내의 상황은 납본된 온라인 전자책의 이용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출판계와 유관 단체들이 국립중앙도서관의 관내 단순열람만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과 농산어촌 작은도서관 간의 디지털원문정보서비스 사업 내 전자책 무료서비스에 대해서도 전자출판 업계는 시장축소의 문제로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경우, 온라인 전자출판물에 대해서 보존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집은 허용하고 있으나, 이것을 관내 열람하는 행위까지도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따라서 캐나다의 사례와 같이 납본된 자료의 이용에 대하여 납본 주체가 선택하고, 피납본 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저작권자 또는 온라인 전자책 제작자와의 협의에 따라, 허락받은 납본자료의 허용 범위, 시기 등의 조건으로 이용자가 피납본기관의 관내에서 열람 및 저작권의 범위 내 복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납본 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 납본자료의 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8 납본자료 매체변형

온라인 전자출판물의 경우 납본된 자료의 복제 및 변형 권리를 규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보존이 무의미하며 기술 환경이 변화하면서 접근도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납본자료의 영구보존과 접근의 측면에서 납본자료의 매체변형을 납본제도 개정 시 고려되어야 한다. 〈표 11〉은 조사 대상국가의 전자출판물 납본자료의 매체변형에 관한 내용이다.

〈표 11〉과 같이 납본된 전자출판물의 보존을 위한 변형은 싱가포르와 노르웨이에 잘 설명되어져 있다. 이 두 국가는 보존과 보안을 목적으로 납본된 저작물을 복제, 제작할 수 있으며 검증된 보존 포맷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보존 포맷 변환은 출판사의 동의를 받은 자료로 제한하고 있다. 온라인 전

〈표 11〉 조사대상 국가의 납본된 온라인 전자출판물의 변형

국가명	납본자료의 매체변형
미국	없음
일본	없음
영국	없음
독일	없음
핀란드	없음
캐나다	없음
싱가포르	보존을 위하여 검증된 보존 포맷으로 변환 가능(출판사 동의 필요)
노르웨이	보존 및 보안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 제작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6조)

3) Lee Kong Chian Reference Library(LKCRL)의 하나의(Onsite)에서 검색 및 서비스.

자책을 납본 수집하는 주요한 목적은 국가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대상 자료의 영구보존과 지속가능한 접근 역시 중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온라인 전자책 납본 관련 법령 개정 시 다른 법령, 예컨대 저작권법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적 문화유산의 영구보존 측면에서 납본자료의 매체변형(검증된 보존 포맷으로 변환, 마이그레이션, 재가공과 재구성 등)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 단 싱가포르의 사례와 같이 매체변형 시 출판사의 동의를 받은 납본자료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전자책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깊이 들어와 있으며, 도서관의 주요 정보원(서비스 매체)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자책은 매체의 허약성, 축적된 정보의 변동성, 정보기술(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노화 등으로 장기적 보존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 정보기술의 노화현상은 다른 요소들보다 통제하기 힘들며, 도서관 내에서 전자책에 대한 장기보존 인식 또한 낮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전자출판물 혹은 온라인자료라는 광범위한 전자출판물의 납본이 아닌, 온라인 전자책이라는 특정 객체를 대상으로 납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국내에서는 도서관법 개정과 '온라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추진과 같은 노력에 불구하고 현재까지 온라인 전자책에 대한 납본 법령은 규정화되어 있지 않다. 특히 '온라인자료 납본법'은 출판계 및 유관단체의 거

센 반발과 법령 제정 시 납본 조항의 불명확성과 미비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해외 국가도서관의 납본 법령에 근거하여 국내 온라인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제도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납본 주체와 피납본기관, 납본 대상 전자책의 범주, 납본 포맷, 납본 부수와 시기, 납본 의무와 방식, 보상과 제재조치, 납본자료의 이용, 납본자료의 매체 변형 등에 대해서 비교·분석하였다.

첫째, 납본 주체와 피납본기관은 납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전통적인 의미의 출판사와 전자책의 출판사, 제작자의 개념은 다르기 때문에, 향후 법령 개정 시 국내의 전자책 제작 환경을 고려하여 납본 주체를 세분화하고 이를 법률 또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둘째, 납본 대상 전자책의 범주는 국가도서관의 망라적 수집원칙에 있어서 고민사항이다. 현재 전자책의 정의와 범위, 형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단정짓기는 무리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전자출판물의 내용과 기록사항을 준수하는 완결한 형태의 전자책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위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온라인 전자책 납본자료의 포맷은 현재 국내에 전자책에 대한 표준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포맷, 즉 현재의 보편적인 출판 포맷으로 납본되어야 한다.

넷째, 납본 부수와 시기는 온라인 전자책의 특성상 인쇄자료와 같이 1부로 제한하기보다는 1회로 횟수를 명시하는 것이 온라인 전자출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납본 시기는 전자출판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명시하는 것이 훼손과 멸실을 방지한다.

다섯째, 납본의 의무와 방식은 법률적 강제가 아닌 최대한 자발적 납본을 유도하고, 국가도서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출판사는 납본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자동수집방식은 출판사 또는 전자책 제작자의 자산의 측면과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시행해야 한다.

여섯째, 보상과 제재조치는 자발적 납본을 최대한 유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이것을 강제하는 제재조치는 현 시점에서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일곱째, 납본자료의 이용은 납본 주체가 선택하고 피납본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납본주체와의 협의에 따라 허락받은 납본자료의 허용 범위, 시기 등의 조건을 규정

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납본자료의 매체변형은 저작권법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유산의 영구보존 목적으로 납본자료에 대한 매체변형(검증된 보존 포맷으로 변환, 마이그레이션, 재가공 등)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납본 대상 자료의 명확한 구분과 납본자료에 대한 이용거절 사항, 납본 제외 조항 등에 대해서는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대다수의 국가는 온라인 전자책을 포함한 전자출판물을 점진적으로 납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출판물의 납본은 법률적 수단이나 국가도서관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비단 법령이 존재하더라도 국가도서관의 납본요청과 이에 따른 출판사의 자발적인 납본 문화가 전제되어야만 온라인 전자책이 국가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후대에 전승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국립중앙도서관. 2010.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제2010-1호)』.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2]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7.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서울]: 국회문화관광위원회.
- [3] 김보현, 선명순. 전자출판물 납본제도 도입방안: 외국사례의 비교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4(1): 119-142.
- [4] 도서관법 [일부개정 2009.3.25 법률 제9528호]. [online]. [cited 2010. 10. 20].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742&PROM_NO=09528&PROM_DT=20090325&>.
- [5] 도서관연구소 웹진. 2009. 『노르웨이국립도서관과 출판사간 문헌의 납본에 관한 협약』. 서울: 국립

중앙도서관

- [6] 서혜란. 2003. 디지털자료의 납본과 보존을 위한 각 국가의 노력. 『정보관리학회지』, 20(1): 373-399.
- [7] 윤희운. 2002. 국내의 전자출판물 납본제도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2): 185-207.
- [8] 윤희운. 2003. 한국의 납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논문발표집』, 16: 27-45.
- [9] 이수상. 2004. 디지털아카이빙의 워크플로우와 보존처리 기술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3): 119-138.
- [10] 최재황, 광승진, 김정택. 2009.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체계 및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209-232.
- [11]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 2010.3.17 법률 제10108호]. [online]. [cited 2010. 10. 20].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766&PROM_NO=10108&PROM_DT=20100317&>.
- [12] 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2009년 해외콘텐츠 시장조사』. [서울]: 한국콘텐츠진흥원.
- [13] 國立議會圖書館 온라인資料의制度的收集. 2010. [online]. [cited 2010. 10. 20].
<http://www.ndl.go.jp/jp/aboutus/data/s_toushin_5gaiyou.pdf>.
- [14] Brithis library. 2010. "International survey on electronic legal deposit." CDNL Annual Meeting, Gothenburg.
- [15] CENL/FEP. 2005. *Statement on the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of Voluntary Deposit Schemes for Electronic Publication*. [online]. [cited 2010. 10. 20].
<http://www.nlib.ee/cenl/doc/05-11CENLFEP_Draft_Statement050822_02.pdf>.
- [16] Copyright Act, Mandatory Deposit of Published Electronic Works Available Only Online. 2010. [online]. [cited 2010. 10. 20]. <<http://www.copyright.gov/docs/online-only/>>.
- [17] Copyright law of the U.K. 2003. Legal deposit libraries Act. [online]. [cited 2010. 10. 20].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3/28/contents>>.
- [18] Federal Register. 2009. 74(134). [online]. [cited 2010. 10. 20].
<<http://www.copyright.gov/fedreg/2009/74fr34286.pdf>>.
- [19] Finland Legal Deposit Act. 2004. [online]. [cited 2010. 10. 20].
<http://www.minedu.fi/export/sites/default/OPM/Julkaisut/2003/liitteet/opm_132_Legal_Deposit_Act.pdf?lang=en>.
- [20] Harai, Naoko. 1999. "Electronic Publications and National Bibliography in Japan."
<http://www.ndl.go.jp/en/publication/ndl_newsletter/112/123.html>.
- [21] Law regarding the German National Library. 2008. [online]. [cited 2010. 10. 20].
<<http://bundesrecht.juris.de/pflav/index.html>>.

- [22] Library and Archives Canada Legal Deposit. 2007. [online]. [cited 2010. 10. 20].
〈<http://www.collectionscanada.gc.ca/legal-deposit/041008-0200-e.html>〉.
- [23] Singapore Digital Legal Deposit. 2007. [online]. [cited 2010. 10. 20].
〈<http://deposit.nl.sg/LDNet-web/faces/voluntaryDeposit.jsp>〉.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0. *The Notice about Collection Online material of type and form(2010-1)*. Seoul: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 [2]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2007. *Online digital Materials Deposit and Use Law Review Report*. Seoul: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 [3] Bo-Hyeon Kim, Myung-Soon Seon.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Publications legal deposit." *Dongguk University Society Science Research*, 14(1): 119-142.
- [4] Library Act [Amended by Act No. 9528, 2009. 3. 25]. [online]. [cited 2010. 10. 20].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742&PROM_NO=09528&PROM_DT=20090325&〉.
- [5]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ibrary and Information Webzine (KRILizine). 2009. *Act no. 32 of 9 June 1989 Relaitng to the Legal Deposit of Generally Available Document*. Seoul: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 [6] Hye-Ran Suh. 2003. "Legal Deposit and Preservation of Digital Material in Various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0(1): 373-399.
- [7] Hee-Yoon Yoon. 2002. "A Comparative Analysis of Legal Deposit System for Electronic Publications." *Jouran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6(2): 185-207.
- [8] Hee-Yoon Yoon. 2003. "Problem and Improvement about the Legal Deposit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Ocaasional Papers Series*, 16: 27-45.
- [9] Soo-Sang Lee. 2004. "A Study on the Digital Archiving Workflow and Preservation Techniqu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5(3): 119-138.
- [10] Jae-Hwang Choi, Seung-Jin Kwak, Jeong-Taek Kim. 2009. "A Study on Legal Deposit Process and Use of Online Digital Materia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1): 209-232.

[11] Publication Promotion Law [Amended by Act No. 10108, 2010. 3. 17]. [online]. [cited 2010. 10. 20].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766&PROM_NO=10108&PROM_DT=20100317>.

[12]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2010. *2009 Market Survey for overseas content*. Seoul: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